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0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천준호 · 박주민 · 박홍근
서영교 · 윤종균 · 송기현
전현희 · 박상혁 · 박정현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⑧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생략)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 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② ----- ----- ----- ----- -----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 ----- ----- ----- ----- ----- ----- ----- -----

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③ ~ ④ (생 략)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
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
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하천·농지·산
림·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
산보호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
일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
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u><신 설></u>	<u>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u> <u>⑧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